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정부포상, 장관표창, 도지사 및 시장 표창에 대하여 따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공적을 심사토록하여 공적사항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의2)
-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국장,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함.
- 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 라.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마.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과장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부 표창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한포상”을 “따른 포상”으로, “모범공무원포상”을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모범공무원포상”을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부서,”를 “부서 또는”으로 한다.

제6조 중 “개인이나단체”를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된 자”를 “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헌신한 자”를 “헌신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제9조제1호 중 “봉사한 자”를 “봉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거양한 자”를 “거양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새마을운동

등”을 “새마을운동 등”으로, “노력한 자”를 “노력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있는자에”를 “있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년4회”를 “연4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자에대하여”를 “수상자에 대하여”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사에의 초청등을”을 “행사 초청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촉”을 “위촉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2항 중 “상장 상금 기타”를 “상장, 상금,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있을때”를 “있을 때”로, “장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을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위원회의”를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 중 “포상은[별지 제5호 서식]”를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관 직 위 성 명 년 월 일 관인			

210mmx297mm(백상지 80g/ ㎡)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 .	
공 적 내 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u>의한</u>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 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 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 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u>따른</u> ----- ----- ----- ----- ----- -----.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u>의</u> <u>한포상</u> 은 표창장, 감사장, 상 장, <u>모범공무원포상</u> , 향토개발 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 하여 시행한다. 다만, <u>모범공무</u> <u>원포상</u>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운영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u>따</u> <u>른 포상</u> ----- --- <u>모범공무원 포상</u> ----- ----- ----- ----- ----- ----- ----- ----- ----- -----.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 2. (생략) 3.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 적 등이 우수한 기관 및 <u>부서</u> , 팀	제5조(표창장)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부</u> <u>서 또는</u> --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	제6조(감사장) -----

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생 략)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생 략)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

- 개인이나 단체-----
-----.

제7조(상장)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또는 그 밖에 -----

3. (현행과 같음)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
----- 된 사람
2. -----
----- 헌신한 사람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정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자에 수여한다.

1. ~ 4. (생략)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년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사람을 선발한다.

1. -----
----- 봉사한 사람
2. -----
----- 거양한 사람
3. -----
----- 새마을운동 등 -----

--- 노력한 사람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있는 자에
게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연4회 -----
-----.

③----- 수
상자에 대하여-----

--- 각 호-----

1. (생 략) 2. 각종 <u>행사에의 초청등을 통</u> <u>한 사기양양</u> 3. (생 략) 4. 수상자를 1년간 시정모니터 <u>로 위촉</u> 시정참여 기회 부여 5. <u>기타</u>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 은[별지 제1호]내지[제3호 서 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u>상장 상금 기</u> <u>타</u>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 다. 제12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 조의 규정에 <u>의한</u> 포상을 요하 는 자가 <u>있을때</u>에는 시의 담당 관, 과장과 산하기관의 <u>장은</u>[별 지 제4호 서식]에 <u>의한</u> 공적조 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u>15일</u> <u>전에</u>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u>20인</u> 이상의 연서로 도 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 <u>행사 초청 등을</u> ----- ----- 3. (현행과 같음) 4. ----- --- <u>위촉하여</u> ----- ---- 5. <u>그 밖에</u> ----- -----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 은 <u>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u> <u>3호서식에 따른다.</u> ②----- <u>상장, 상금,</u> <u>그 밖의</u> ----- -----. 제12조(포상절차) ①----- ----- <u>따른</u> ----- ----- <u>있을 때</u>----- ----- <u>장은</u> <u>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u> ----- ----- <u>15일</u> <u>전</u>----- -. ----- <u>20명</u> ----- -----.
---	---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②-----
-----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
회의 -----
-----.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포상대장) -----

<u>포상</u>은[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u>시행</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u>포상</u>은 별지 제5호서식----- -----. 제16조(시행규칙) ----- <u>시행</u>에 ----- -----.
---	--

관계법령

□ 「정부 표창 규정」

제10조(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13조(공적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표창의 표창 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3.1.16]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 ⑪ 생략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3.21>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